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12. 14.(수) 18:00 < 12.15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14.(수)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 정 권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건 (044-203-4543)

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 발표

앞으로 3년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,

기업은 **❶연간 3.7만건 공공기술을 자유롭게 대여하고 이전**받으며, **❷도전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사업화**할 수 있습니다.

300개가 넘는 **공공연구기관**은 **❶연구비·기술료를 활용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업과 공유**하며, **❷모험자본을 유치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**합니다.

공공연구기관 **연구자와 직원**이 **❶이해충돌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술창업에 도전**하며, **❷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**을 받습니다.

민간 전문기관은 **종합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**을 키워, **공공연·기업과 협업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**을 높입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**「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」**을 확정해 발표하였다.

【 수립 배경 및 의의 】

□ **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**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」에 따라 산업부가 과기정통부, 교육부, 중기부,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하여 3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는 **범부처 종합계획**이다.

○ 계획수립을 위해 17개 관계부처·청으로 구성된 T/F를 통해 내용을 협의하였으며(6월~), 대학·출연연·전문기관·협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총16회)과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(11.24)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였다.

【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】

□ 이번 **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**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**"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"**을 비전으로 설정하고,

○ 공공연과 기업 등 기술혁신 주체에게 도전과 위험을 감수할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**7개 중점 추진전략**을 마련하였다.

□ **중점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**

◇ (전략 ①) R&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.

□ **시장·성과 중심으로 R&D 과제를 기획하고, 사업화 역량을 갖춘 R&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.**

○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**기업간 경쟁형 기획**, 수요·공급기업들이 참여하는 **통합형 기획**, 원천기술-사업화 연계 **원스톱 기획** 확대

○ 핵심·원천특허 선점과 시장 진출을 위해 R&D기획 단계부터 IP 분석을 통해 R&D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**IP-R&D 확대**

○ 산업기술 R&D 수행기관(기업, 공공연 등)의 **사업화 역량 평가를 강화**하고, 원천기술 과제 대상 **사업화 평가 프로세스** 신설

□ **시장수요·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을 마련한다.**

○ 시장, 기술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**수행과정에서 자율적 목표변경(Moving Target) 적용·확대**

○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**연구활동비 항목(직접비)에 기술이전·사업화를 위한 활동비용의 추가 여부** 검토

◇ (전략 ②) 선도자(first mover)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.

□ **혁신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만에 공공연 기술이전·거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.**

○ 공공연 보유기술의 **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을 폐지하고**, 기술특성, 현장수요,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**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 이전 방식 자율 결정**

* (현황)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여년간 통상실시 원칙 고수 → (문제점) 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선도적으로 투자할 유인을 줄이고 민간투자 유치도 곤란

○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시 일정기간 공지하고, 실질적으로 **국내 제조에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실시·양도 추진**

○ 공공연이 시장성이 큰 기술을 창출해 기업 등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**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 개선방안 검토**

□ **기초·원천 연구성과와 시장의 간극을 줄이는 Lab to Market 지원을 강화한다.**

○ 연구자-중개기관(TLO)-수요기업 공동으로 기초·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**기술키움 사업, 기술 스케일업(Scale-up)** 등 확대

○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**기업수요에 맞게 제품별·기능별로 패키징**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 구성, 컨설팅 지원

○ **기술신탁 활성화**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**기술거래·평가, 사업화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** 검토

◇ (전략 ③)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·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.

□ **R&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**한다.

○ **사업화 초기(Seed) 단계**에 **벤처캐피털, 사업화 전문기관** 등이 **기획, 투자한 프로젝트**에 정부가 **우선 투자**

○ **스케일업(Scale-up) 단계**에는 투자규모·기간·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의 출연방식 외에 **지분투자, 융자 등 R&D 지원방식을 다양화**

□ **`23~`25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**를 조성한다.

○ 대·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**기업형 벤처캐피털** (Corporate Venture Capital) **운용 펀드를 3천억원 이상 조성**

○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여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** 추진

□ 빅블러 시대 기술융용과 융합을 통해 산업문제를 해결하는 **'(가칭)함께 달리기(Colab4DeepTech) 프로그램' 을 추진**한다.

○ 기업, 공공연, 투자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**비즈니스 모델 수립 → R&D투자 → 민간 투자유치 전주기 지원**

□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**"혁신박스(Innovation box)" 제도 도입을 검토**한다.

○ 혁신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수익을 낸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, **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R&D 활동을 촉진**하는 효과 기대

* 네덜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스위스 등 유럽의 10여개 국가가 투자유치와 촉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며, 최근 싱가포르('18), 호주('22)도 동 제도를 도입

◇ [전략 ④] 공공연 자체 창업의 속도를 높인다.

□ **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**에 연구자,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, **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**한다.

* 현재는 연구자,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직접 창업하거나 공공기술을 활용한 민간 창업에 참여할 경우, 현행 법령에 충분한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

○ 연구자,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**최대 6년까지 휴·겸직 허용**

○ 연구자,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창업기업 주식보유**, **공공연 시설·연구성과 등 활용에 대한 근거** 마련

*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(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), 제14조(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) 등

□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**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**도 추진한다.

○ **공공연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**을 현행 50%에서 **30%로 완화**해 기술지주회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 확대

○ **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**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%를 넘도록 하고, **설립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**해 자회사 투자유치를 촉진

* (현행) 출연연 등이 설립하는 첨단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20% 이상, 대학 등이 설립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10% 이상 보유 의무화 → (문제점) 자회사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

○ **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** 그 **자본금 중 기술출자에 해당하는 금액**이 차지하는 비중을 30%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, **설립 이후에는 10% 이상만 유지하도록 완화**해 불요불급한 기술출자 문제 해소

◇ [전략 ⑤]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한다.

□ **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 등 역량을 강화한다.**

○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(TLO)의 설치·운영시 공공연 특성에 따라 **내부부서, 출자회사, 민간전문회사(기관) 등을 지정해 운영**할 수 있도록 허용

* ①내부부서 설립 의무제를 지정제로 전환 ②민간전문회사 위탁 근거 도입 등

○ 기술이전·사업화 추진체계를 출연연·대학·전문연 등 **연구지원체계 평가에 반영하여 간접비 산출 비율 산정**

□ **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사업화 투자재원을 확충한다.**

○ 기술이전 대가인 **기술료**와 별개로 **사업화 지원(컨설팅,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)에 관한 사항**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**대가를 수취**할 수 있는 근거 도입

○ **사업화 지원 대가**는 현금 외 **주식, 채권, 주식매수선택권** 등 성과 공유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

○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**연구개발비 중 성과활용지원비(간접비) 항목**에 **기술사업화 투자항목의 추가여부를 검토**하고, 공공연의 기술료 사용 용도에 **기술이전·사업화 소요비용 지출과 사업화 재투자 추가**

◇ [전략 ⑥]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.

□ **민간-공공 거래기관 간 공정한 경쟁·협력 환경**을 조성하고, **기술거래사 제도**를 개선한다.

○ **민간주도로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고, **기술거래사 합동사무소**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활동을 촉진

□ **기술평가, 종합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.**

○ **기술평가기관 지정시** 필요한 인력요건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촉진하고, **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**는 관계법령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○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①기술거래, ②인큐베이팅, ③엑셀러레이팅, ④투자유치 등 **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**

◇ [전략 ⑦] 온-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.

□ **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.**

○ 가입자 20만명의 **국가기술은행(NTB)를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**해 전문가 매칭, 애로 해결, 실증 연계, 기술평가, 사업화 금융, 기업 밸류체인 정보 등 **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**

○ 민간 서비스 개발·제공에 필요한 **정부·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** (예시: 기술평가 데이터) **공유·활용 지원**

□ **지역 내, 전국 단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.**

○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, 공공연, 민간 전문기관,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**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**를 구축하고, **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**

○ 민간 주도로 국내외 기술공급·수요·중개자, VC 등이 참여해 연계·협력을 모색하는 「Korea Tech Fair」(가칭) 추진

□ 산업부는 "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**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**"이라고 강조하며,

○ "이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**기업이 앞장서고, 공공연·민간전문기관·투자자가 힘을 모으고,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**을 만들어 가겠다"고 밝혔다.

< 별첨 > 제8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